#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에 관하여

## 당신의 의지와 희망을 응원합니다!

2014년 4월부터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가 바뀝니다.

●새로운 제도는 국공사립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30만 4200엔(연수입 910만엔 정도) 미만 세대(※ 1 )를 대상으로 "취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증명서(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기재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30만 4200엔 이상인 세대는 수업료를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취학 지원금의 지급 한도액은 전일제의 경우 월 9,900엔 【공립 시간제 고등학교는 월 2,700엔, 통신제 고등학교는 월 520엔, 사립 시간제 • 통신제 고등학교는 월9,900엔】입니다. 단위제의 경우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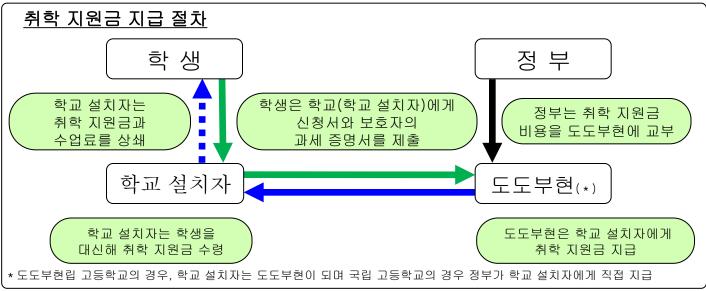
●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립고 학생의 세대에는 취학 지원금이 가산됩니다.

0엔 (비과세) (연수입 250만엔 미만 정도) ~5만1300엔 미만 (연수입 250~350만엔 정도) 2.5배 (전일제의 경우 24,750엔/월)

2배 (전일제의 경우 19,800엔/월)

~15만4500엔 미만(연수입350~590만엔 정도) 1.5배 (전일제의 경우 14,850엔/월)

- ●새로운 제도는 2014년 4월 이후 입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3년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전 제도(※ 2)가 적용됩니다.
  - ※1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는 보호자 (친권자)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연수입은 보호자 중 한 명이 일을 하거나 고등학생 1명(16세 이상), 중학생 1명의 4인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공립 고등학교는 수업료 불징수 제도, 사립 고등학교 는 취학 지원금 제도(전일제로 연수입 250만엔 미만의 세대는 월19,800엔, 연수입 250∼350만엔 세대는 월14,850엔, 연수입 350만엔 이상 세대는 월 9,900엔이 지급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소득 제한 및 사립 고등학교의 저소득자를 위한 취학 지원금 가산을 현행 제도 이상으로 확충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 Q & A

#### Q1. 종래의 제도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지금까지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간의 교육비 부담에 큰 격차가 있었던 것과 저소득층 세대의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제도에서는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30만 4200엔 이상인 세대는 수업료를 개인부담하게 되었으나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취학 지원금 가산을 지금보다 더확충하는 등 가정의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됩니다.

#### Q2.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인가요?

종래의 불징수 제도 및 취학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었던 국공사립 고등학교(전일제, 시간제, 통신제) 및 중학교 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고등 전문학교(1~3년),전문 학교 고등 과정과 더불어 전문 학교의 일반 과정 및 각종 학교 중에서국가 자격자 양성 과정에 지정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도 취학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예정입니다. 또한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재외 교육시설 고등부 학생에게의 지원도별도로 실시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학생 및 3년(시간제 통신제는 4년)을 넘게 재학 중인 학생
- 전공과목, 본과목 이외의 학생 및 과목 이수생, 청강생
- 시정촌 소득세할 주민세가 30만4200엔 이상 세대의 학생

#### Q3.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취학 지원금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서(학교를 통해 배부됩니다)와 과세증명서(각 시정촌 창구에서 발행합니다) 등의 소득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4년도입학 예정자는 원칙 상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제출처는 도도부현에 따라다르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 Q4. 취학 지원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학교 설치자(도도부현 및 학교 법인 등)가 학생 본인을 대신해 수령하여 수업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학생 본인(보호자)은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교 수업료와 취학 지원금의 차액은 학생 본인(보호자)이 지불해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일단수업료를 전부 징수한 뒤 취학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Q5. 취학 지원금 이외의 고등학교 단계의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장학 급부금"제도가 창설됩니다. 이는 도도부현의 방침에 따른 국가의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므로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도부현에서는 정부에 의한 수업료 지원의 일환인 "취학 지원금 제도"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수입에 따른 수업료 감면 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의 문의처는 아래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문부과학성 초등중등 교육국 고교 수학 지원실 고교 수학 지원 상담 전화 (평일 10:00~17:00)

전화 03-6734-3176 이메일 mushouka@mext.go.jp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mushouka/index.htm

文部科学省 就学支援金



